

# 1. 동문회 회칙(안)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동문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주소)** 본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길 232(대림3동 665-10)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.

1. 회원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
2.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동문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, 보존 사업
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회 원 및 임 원

**제5조(구분)**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
1. 정회원은 원칙적으로 모교 및 전신인 서울침례신학교 졸업생으로 한다.
2. 명예회원은 모교 교직원 및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결의로 추대한다.

**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

-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비 부담과 회칙 및 본회 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-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본회 활동 후원의 의무를 지닌다.

**제7조(임원의 구분)** 본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임원진으로 구성되며, 조직표는 별첨과 같다.

1. 회 장 : 1명
2. 부 회 장 : 약간명
3. 사무총장 : 1명
4. 회 계 : 1명
5. 서 기 : 1명
6. 감 사 : 2명
7. 총무국장
8. 홍보국장
9. 재정국장

## 10. 조직국장

### 제8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9조(임원의 선출)

- ①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서기, 회계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총무국장, 재정국장, 홍보국장, 조직국장은 사무총장의 지명과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10조(임원의 기능)

- ①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,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,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지닌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사무총장은 본회 회무 및 제반 업무의 결정권과 실행권을 가지고 실질적 본회의 활동을 집행하며, 회장에게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.
- ④ 회계는 본회의 수지에 관한 사무와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서기는 총회를 비롯한 본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의 기록을 담당한다
- ⑥ 감사는 회무 서류·수입지출 대장 및 결산 서류 등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처리한다.

### 제11조(국의 설치)

- 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 국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각 국은 실무 임원진의 역할을 수행하며, 임원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③ 국은 국장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.
- ④ 국에는 국장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국의 역할)

- ① 총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재정국은 본회의 수지에 관한 사무와 예·결산 업무를 실행하며 회계 유고시 부 회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③ 홍보국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제작 발간하고, 본회에 관한 각종 홍보를 담당하며 서기 유고시 부서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조직국은 회원 경조사를 비롯 동문회원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며, 동문회 내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구성·관리한다.

**제13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** 본회에는 상황에 따라 사무총장 산하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# 제14조(특별위원회 구성)

- ① 특별위원회(이하 “특위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특위 위원장은 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**제15조(총회의 구성과 소집)**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

회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3.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6조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2.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회계, 서기, 감사를 임명한다.
3. 예산 및 결산의 심의·승인
4. 사업계획 심의·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
**제1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**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각 기별 동문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, 각 국장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.

**제18조(소집)**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안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9조(구분)**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, 찬조금,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구분한다.

**제20조(회비)** 본회의 회비는 해당 임기 중 임원회(또는 운영위)에서 결정한다.

**제21조(찬조)** 본회는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.

**제22조(사업수익)** 본회는 수익사업을 통한 사업수입을 적립할 수 있다.

**제23조(회계연도)**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연도에서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## 제 5 장 장 학 회

**제24조(설치)** 장학회는 본회 산하에 둔다.

**제25조(운영)** 장학회 회장은 총 동문 회장이 겸직하며, 장학회 운영에 대한 제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**제26조(장학기금)** 장학기금은 회원회비를 포함한 본회 재정에서 충당한다.

**제27조(장학생 선발)** 장학생 선발은 모교 장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회(운영위원회)가 결정한다.

**제28조(장학금 지급)**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급액은 모교 장학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.

## 제 6 장 고 문

**제29조(추대)** 역대 동문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,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30조(역할)** 고문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## 제 7 장 상 별

**제31조(시상)** 본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공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상할 수 있다.

**제32조(제명)** 본회 회원으로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 처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1)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- 2) (회칙개정)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3) (통상관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<총동문회 임원구성 조직표>

